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3
----------	-----

2018년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춘례·강동길 의원(찬성의원 12명)
- 나. 제안일 : 2018년 10월 17일
- 다. 회부일 : 2018년 10월 29일
- 라. 상정일 : 제28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례 의원)

### 가. 제안이유

-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자원봉사캠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나. 입법예고 (2018. 11. 1. ~ 11. 8)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안제2조제5호)하고, 자원봉사캠프 활동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안제10조의3)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생활권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인 ‘자원봉사 캠프’는 현재 411개(동주민센터 356개, 사회복지시설 등 55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자원봉사캠프는 동주민센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인 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임에도 지원 근거는 없는 상황임.
  - ※ 자치구 차원에서 월 10만원 또는 분기별 20~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캠프 상담가에게 1일 4시간 기준 5천원 ~ 10천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캠프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18년 기준 10개 캠프에 각 100만원)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캠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
- 동 개정조례안은 동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구성과 지역 의제 해결의 기본요소인 주민들의 초기참여에 대한 마중물 역할 및 동단위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자원봉사캠프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 민(民)이 앞장서고 관(官)이 지원하여 자원봉사의 기본정신 실현과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자원봉사캠프”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 안 제2조제5호는 “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부족과 지리적·심리적 접근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생활권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 “자원봉사 캠프”는 서울시장방침(제397호, 2005.7.27.)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수요·공급기관으로서 기존의 복지기관, 대학, 종교 시설, 기업 등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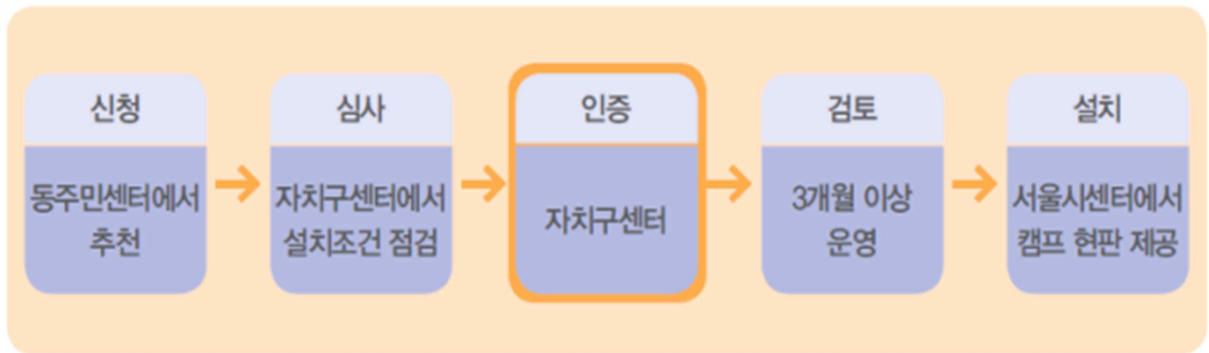
<p><b>캠프란?</b></p> <p>동주민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발휘하여 동네의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해주는 <u>개방적 주민참여 플랫폼</u></p>	<p><b>봉사단체와는 어떻게 다른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기반의 조직경계가 분명한 직능단체 혹은 비공식적 봉사팀의 형태와는 달리 캠프를 운영하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모임, 단체, 주민 개인 등에게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형태이며, 동시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와의 공식적 연계를 통한 구 조화된 운영과 사업을 수행한다.</li> <li>○ 동 캠프는 개방적 네트워크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 이므로 상사적인 연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li> </ul>
--	--

- 자원봉사캠프를 정의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맡아서 기여한 점과 풀뿌리 자원봉사참여를 체계적으로 확산·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u></p>

- 정의 규정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할 것인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령에서 한두 조문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법제처 입안심사기준)과 외래어가 정의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바, 이를 순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자원봉사캠프 신청절차〉



- ① 신청 : 신규 캠프의 경우, 설치조건 확인 후 동주민센터 캠프 담당자가 자치구자원봉사 센터로 승인 신청을 한다.
- ② 심사 : 자치구센터에서는 설치조건에 부합하는 캠프인지 점검한다.
- ③ 인증 : 점검 후 신청접수 일주일 이내로 승인여부를 처리를 한다. 이에 따른 결과는 해당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통보한다.
- ④ 검토 : 승인된 캠프가 3개월 이상 운영(최소 월1회 이상)되는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⑤ 설치 : 3개월 이상 지속 운영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로 캠프현판을 신청한다.

## 다. 경비지급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의 범위 여부(안 제10조의2)

- 안 제10조의3은 자원봉사 활동단체인 “자원봉사캠프”에 대해 활동비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 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상위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1))에서 무보수성, 자발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제18조)2)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단체(종교단체, 기업봉사단체 등)에 대해 활동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동 개정조항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캠프의 활동 및 운영 예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 확보 방안과 예산의 지원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김춘례, 강동길 의원(2명)  
찬 성 자 : 안광석, 이현찬, 이동현,  
이세열, 이경선, 김경우,  
김소영, 김경영, 문병훈,  
최영주, 노승재, 최정순 의원(12명)

## 1. 제안이유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5호)

나. 자원봉사캠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8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5조, 제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u></p> <p><u>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 자원봉사캠프 활동비 지원
    - 상담가 실비
  -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사무관리비

#### 나. 전제

- 자원봉사캠프 지원의 범위는 활동비(상담가 실비지원) 및 운영비(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로 가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411개 자원봉사캠프의 수 및 2,735명의 상담가 인원은 변동 없을 것으로 가정
- 현재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캠프에 구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상담가 실비지원’ 은 현재 구비로 지원중인 6개 자치구 평균 사업비를 준용하여 비용추계
-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4개 자치구 평균 사업비를 준용하고, ‘사무관리비’ 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18개 자치구 평균 사무관리비를 준용하여 비용추계
- 물가 상승률 미반영

####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라. 방법

- 자치구의 자원봉사캠프 지원 자료를 근거로 추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950,58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활동비 (상담가 실비)	196,920	196,920	196,920	196,920	196,920	196,920	984,600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208,500	208,500	208,500	208,500	208,500	208,500	1,042,500
		사무관리비	384,696	384,696	384,696	384,696	384,696	384,696	1,923,480
	소계(b)	790,116	790,116	790,116	790,116	790,116	790,116	3,950,580	
□ 총 비용(b-a)		790,116	790,116	790,116	790,116	790,116	790,116	3,950,58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 자원봉사캠프 활동비 지원
    - 상담가 실비
  -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사무관리비

###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3,950,580천원

- 연간비용 ≙ 790,116천원

※ '18년 자치구의 자원봉사캠프 지원내역을 준용

나.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실비 ≙ 984,600천원

- 5년간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실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 ~ 2023년)

- 연간비용 ≙ 196,920천원

· 상담가 실비 : 6천원 × 12개월 × 2,735명 = 196,920천원

※ 상담가 1일 4시간 기준 6천원을 2,735명에게 지원

다.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 1,042,500천원

- 5년간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 ~ 2023년)

- 연간비용 ≍ 208,5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8,340천원 × 25개 = 208,500천원

※ 자치구별 연 8,340천원 지원

라. 자원봉사캠프 사무관리비 ≍ 1,923,480천원

○ 5년간 자원봉사캠프 사무관리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384,696천원

· 사무관리비 : 78천원 × 12개월 × 411개 = 384,696천원

※ 411개 자원봉사캠프에 월 78천원 지원